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002호
- 다. 제출일자 : 2020. 10. 16.
- 라. 회부일자 : 2020. 10. 26.

2. 제안이유

-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는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관련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나.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라 향후 제정할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 7. 30.~8. 19.)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법률적 근거인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3924호, 2016. 1. 27., 일부개정)되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무의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5월 행정안전부가 법과 행정의 일관성을 통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재난영향분석과-2873, 2019.5.30.)한 바가 있어 폐지하더라도 법적 문제나 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를 살펴보면, 기관위임사무¹⁾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에 관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할 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재협의 포함)’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1)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기관위임사무의 예는 도로·하천·공원 등의 유지·관리·호적·경찰사무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등에서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주무부장관 기타 국가의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적으로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④ ~ ⑤ (생략)

-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려는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 여겨지며 다만, 관련 사무의 연속성을 위해 서울시는 조례 폐지 후 규칙 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음.

[붙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붙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운영개요

- **위원수 : 40명**(위원장 1인 : 물순환안전국장)
 - 구성인원 : 내부 1명, 외부 39명
 - ※ 시의원 참여현황 : 없음
 - 임기 : 2020.08.01 ~ 2022.07.31
- **기 능 :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내부위원 1명, 수자원(8명), 도시계획(4명), 상하수도(4명), 토질및기초(5명), 토목시공(6명), 교통(1명), 건축(6명), 조경(2명), 환경(3명)
- **설치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검토대상 및 내용

- **검토대상**
 -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재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
- **검토내용(심의내용)**
 -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 해당 사업으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개최현황(2020.9. 기준)

협의대상		심의방법	2018년	2019년	2020년
소 계			8	15	52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서면	1	11	44
개발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서면	6	2	6
	재해영향평가	소집	1	2	1(서면대체)

□ 개최 세부현황

방법	회의일시	참석위원	주요안건	회의결과	수당 (천원)
서면	18.01.08	유다은외4	상계동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8.03.15	류은영외4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설-개발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8.05.03	구자용외4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공사-개발	조건부 협의	250
소집	18.05.14	노혜진외5	개포(구룡마을)도시개발구역-개발	조건부 협의	600
서면	18.09.06	임훈섭외4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공사-개발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8.09.06	연제문외4	개포9단지 공무원아파트 재건립공사-개발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8.10.17	박택준외4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개발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8.11.21	전영옥외4	창동 도시개발사업-사업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06.18	최정동외4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07.10	우남철외4	국회대로 지하차도 설치 사업-개발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07.12	김대영외4	신내4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소집	19.07.15	전영옥외4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개발	조건부 협의	500
소집	19.08.02	김순정외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개발	조건부 협의	500
서면	19.08.09	서종원외4	은평구 대조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08.26	김정근외4	은평구 구산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08.28	장대창외4	서초구 서초동1365-8 역세권 청년주택-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09.08	오정배외4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09.20	전세진외4	서초구 양재택지 지구 단위계획 결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10.15	김정근외4	강서구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11.11	김대영외4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개발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12.03	최정동외4	도봉창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12.04	김정근외4	마포구 당인동 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19.12.09	성연주외4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방법	회의일시	참석위원	주요안건	회의결과	수당 (천원)
서면	20.01.15	안경호외4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광화문복합역사 신설-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1.28	김순정외4	서울 증산 승인-개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2.10	최정동외4	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2.10	안경호외4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2.17	최정동외4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2.17	김대영외4	서초구 서초동 1448-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3.03	김정근외4	강서구 방화동 행복주택 주민센터 건설사업-개발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3.24	안경호외7	주한 미대사관 부지 용도지역 변경-행정	조건부 협의	400
서면	20.03.24	김대영외4	송파 문정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3.24	김정근외4	광진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3.27	김대영외4	서계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3.31	최정동외4	삼성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4.21	김대영외4	관악구 봉천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관악구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5.13	안경호외4	뚝섬유수지 내 체육시설 및 주차장 중복결정-행정 휘경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6.02	김순정외4	한남 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 성북 하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6.15	김정근외4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중랑구 상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노원구 상계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조건부 협의	250

방법	회의일시	참석위원	주요안건	회의결과	수당 (천원)
서면	20.06.15	김순정외4	현릉로 확장 공사	조건부 협의	250
			노들로 구조개선사업		
서면	20.06.26	김대영외4	중랑구 상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조건부 협의	250
			강북구 수유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소집	20.07.10	안경호외6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개발	조건부 협의	350
서면	20.07.23	안경호외4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성북 석관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서면	20.07.23	김정근외4	성동 하왕십리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구로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서면	20.08.19	김대영외4	성북 하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은평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서면	20.08.19	김정근외4	양천 목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성북 종암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서면	20.09.01	서애숙외4	성수 1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동작 노량진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서면	20.09.01	김정근외4	광진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노원 어린이 청소년 스포츠 체험시설 건립-행정		
서면	20.09.14	김대영외4	강서 공항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행정	조건부 협의	250
서면	20.09.14	안경호외4	수락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행정	조건부 협의	250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행정		

□ 위원명단

연번	구분	성명	현직	분야	비고
1	위원장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		공무원
2	위원	고미애	(주)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건축	전문가
3	위원	김공숙	(주)토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건축	전문가
4	위원	김문모	신구대학교 교수	상하수도	학계
5	위원	김순영	(주)대우건설 부장	건축	전문가
6	위원	김주성	(주)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수자원	전문가
7	위원	노혜진	케이에스엠기술(주) 상무	도시계획	전문가
8	위원	도중호	(주)삼보기술단 부사장	상하수도	전문가
9	위원	소기옥	(주)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상하수도	전문가
10	위원	안재현	서경대학교 교수	상하수도	학계
11	위원	오정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수자원	전문가
12	위원	이유림	발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건축	전문가
13	위원	임광수	주엔지니어링(주) 부사장	교통	전문가
14	위원	한상희	보금개발 대표이사	토목시공	전문가
15	위원	곽정하	셀파이엔씨(주) 대표이사	토질및지초	전문가
16	위원	김대영	한빛구조ENG 대표이사	건축	전문가
17	위원	김석태	(주)오케이건설 본부장	토목시공	전문가
18	위원	김정근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건축	전문가
19	위원	김지연	신일환경(주) 상무	환경	전문가
20	위원	김진영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수자원	전문가
21	위원	류지영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사	토목시공	전문가
22	위원	박기숙	(주)이산 상무	조경	전문가
23	위원	박택준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수자원	전문가
24	위원	신지영	(주)동성엔지니어링 상무	환경	전문가
25	위원	안경호	(주)동명기술공단 부사장	도시계획	전문가
26	위원	안영애	안스디자인조경설계사무소 소장	조경	전문가
27	위원	연제문	(주)대한콘설탄트 건설사업부장	토목시공	전문가
28	위원	오윤관	(주)헤인이엔씨 상무	환경	전문가
29	위원	오정배	(주)천일 부사장	토질및지초	전문가

연번	구분	성명	현직	분야	비고
30	위원	이상수	(주)휴먼씨엠건축사 대표이사	토목시공	전문가
31	위원	이희창	한국건설관리공사 상무	토목시공	전문가
32	위원	임훈섭	(주)천마기술단 전무	토질및지초	전문가
33	위원	정형진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토질및지초	전문가
34	위원	차경섭	(주)대우건설 책임연구원	토질및지초	전문가
35	위원	서애숙	(주)인스페이스 회장	수자원	전문가
36	위원	유다은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도시계획	학계
37	위원	이규민	성균관대학교 연구원	수자원	학계
38	위원	이금진	인천대학교 교수	도시계획	학계
39	위원	장대창	SG(주) 사장	토목시공	전문가
40	위원	전세진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수자원	전문가